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19호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기업인등의 선정 대상을 확대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묵묵히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인등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기업인등 선정 대상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를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나. 관련조문 : 제4조(예우 및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250백만원

$500\text{백만원/업체당} \times 100\text{개사}^* \times 0.5\%(\text{이차보전율})$

* 50인 이상 기업 약1,000개 업체 중 200개 업체 선정(여성정책과) 목표
그 중 약 50%인 100개 기업 신청 예상

*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2) 연도별 비용추계

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기간 최대 3년(연간 250백만원)

나. 추계 결과

1) 총 사업비(시예산) : 750백만원 (250백만원 $\times$ 3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소계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재원 조달							
시비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일반회계	250,000	250,000	250,000			750,000

4. 작성자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장 구 영 모